

2025년도 담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(사진촬영기사) 채용 재공고

담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사진 촬영기사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있는 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년 1월 14일

담양군의회 의장

1 모집개요

- 공고기간 : 2025. 1. 14. ~ 1. 21.(7일간)
- 접수기간 : 2025. 1. 17. ~ 1. 21.(5일간)
 - ※ 접수시간 : 평일 09:00~18:00[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]
- 채용인원 : 1명
- 채용분야 및 내용

구 분	채용분야	채용인원	직무내용	근무처
기간제근로자	사진 촬영기사	1명	· 의정활동 사진 촬영 등	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2 근로조건

- 채용기간 : 2025. 1. ~ 2025. 12. 31.(예산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음)
- 근무일수 및 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 근무[평일 09:00~18:00]
 - ※ 근로여건 및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, 근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- 기준단가(사진촬영기사) : 90,270원/일
 - ※ 사진 촬영기사는 주로 현장 근무로 타 분야 채용자와 급여의 차등을 둠.
- 후생복지 : 4대보험 가입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3

응시자격

- 응시연령 :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
- 주 소 지 :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최종시험일(면접시험일)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양군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
- 자격요건 : 상시 근무가 가능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
※ 업무시간 중 겸직 불가
- 성별·학력 : 제한없음
- 응시결격사유 등
 - 「담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」 제22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(기준일 : 면접시험일)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〈담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(채용결격사유)〉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.
 1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7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1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② 채용권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를 받아야 한다

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〉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4 시험방법

○ 제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격 등에 대한 적격여부 서면 심사(주소지, 연령 등 확인)

○ 제2차 시험 : 면접시험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-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
 - ①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 -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 -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합격자 결정 : 면접시험 결과 평균 60점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

※ 단,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를 “하”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.

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○ 원서 교부

- 담양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dycouncil.go.kr>) “고시공고”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서식(응시원서, 지원신청서 등)을 다운로드받아 작성

○ 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1. 17. ~ 2025. 1. 21.(5일간)
 - 평일 09:00~18:00[점심시간(12:00~13:00) 및 주말·공휴일 제외]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
 - 응시원서의 훼손이나 접수 누락, 구비서류의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
- 접 수 처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(☎061-380-3531)

6 채용절차 및 일정

절 차	일 정	비 고
채 용 공 고	2025. 1. 14. ~ 1. 21.(7일간)	- 담양군의회 홈페이지
응 시 원 서 접 수	2025. 1. 17. ~ 1. 21.(5일간)	- 방문접수(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) *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* 주말·공휴일 접수 불가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장소 공지	2025. 1. 23.(목) 예정	- 담양군의회 홈페이지
면 접 시 험	2025. 1. 24.(금) 예정	- 담양군의회
최 종 합 격 자 발 표	2025. 2. 3.(월) 예정	-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

※ 채용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임

-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
- 응시원서(서식 1) 1부
- 지원신청서(서식 2) 1부
 - 경력 및 자격사항을 기재하였더라고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제출 등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- 자기소개서(서식 3)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(서식 4) 1부
 - 반드시 성명, 서명은 자필로 작성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서식 5) 1부
- 확인서(서식 6) 1부
- 주민등록초본 1부(주소 이력 포함)
 -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
-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※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

- 입사지원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
-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내의 서류이어야 함.

-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서식은 담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의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, 공고문에 포함된 지정서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결격 처리됩니다.
-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.
- 응시인원이 많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포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도 근로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, 신체·정신상의 문제 등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담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(☎ 061-380-353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.
- 담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한 달 동안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담양군의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.
-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」)를 작성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(☎ 061-380-3531)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하시거나,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.
- 담양군의회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